

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26-1호

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 「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」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·고시합니다.

2026년 1월 15일

화학물질안전원장

「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」 고시 일부 개정

1. 개정 개요

개정된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(20.3.24. 시행)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 지정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가. 기존 지정 물질에 대한 살생물제품유형 추가 지정

- [별표] 중 “91”, “102”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추가 지정 및 승인유예기간 부여

연번	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	고유번호 (CAS No.)	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	승인유예기간
91	Calcium dihydroxide	1305-62-0	3-나.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	2027.12.31.

연번	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	고유번호 (CAS No.)	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	승인유예기간
102	Copper monoxide	1317-38-0	3-다. 섬유·가죽류용 보존제	2027.12.31.

나.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 지정

- [별표]에서 아래의 연번으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 지정 및 승인유예기간 부여

연번	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	고유번호 (CAS No.)	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	승인유예기간
356	Silver silicate glass	고유번호 없음	3-가. 제품보존용 보존제	2027.12.31.
			3-나.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	2027.12.31.
			3-다. 섬유·가죽류용 보존제	2027.12.31.

다. [별표]의 연번 “356”부터 “368”까지를 “357”부터 “369”까지로 변경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.